

# 속도전 없었다더니…종건,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지난 10월 시공사에 광주대표도서관 공정률 높일 방안 마련 요구  
종건 “월간 공정률 미달돼 요구”…전문가 “시공사 압박 심했을 것”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붕괴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 사고 1개월 전 시 공사에 공정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진 공사 시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무리하게 공사를 시지한 적은 없다”는 게 광주시 해명이지만 애초 계획 공정률에 못 미치는 데 따라 예상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감리단과 함께 시공사측에 “건축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은 총 누계 공정률이 5% 미달하거나 월간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이를 보고하고 시공사에 공정관리 절차 이행을 지시하는 절차다.

시공사는 감리단 지시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고 감리단은 이를 기준으로 현장 점검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 측은 당시 월간 공정률이 기준보다 미달해 대책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시자기 내려진 10월 30일 기준 누계 공정률은 66.82%로, 목표 공정률(68.67%)에 못 미쳤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또 월간 공정률의 경우 계획 공정률보다 1%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 동안 시공사는 1.1% 공정률을 진행했는데, 월간 계획 상 2.1622%(월간 계획공정

률의 10% 수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월간 공정률이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못 미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측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정관리 절차로, 공정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는 일반적인 계획”이라며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시공사가 도급액의 1만분의 5 수준의 배상금을 물게되고, 영업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누계 공정률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부도로 시공사가 한 곳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부도 전 결정된 기준 공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노동당국의 부실 시공 원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획 공정 일자와 분기별 감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건물 붕괴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사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투입해 시공을 했어야 한다”며 “공기를 맞추겠다며 속도를 높이려 했다면 부실 시공이 이뤄지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이 작업이 중단된 채 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종합건설본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자료 공개 ‘미적’

### “3자 의견 청취·내부 검토 필요”

공개 난색에 오히려 의혹 키워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자료들을 낱낱히 못 할 사유로 공개를 미루면서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감리보고서 등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 자료에 대한 요청에도 “내부 보고가 안 됐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감리, 설계, 시공업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현장의 발주처가 광주시 본인인 만큼, 자신의 책임을 덜고자 사안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붕괴 사고 관련 핵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고 당시 공정 관리와 구조 안전성, 감리 적정성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요청 자료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광주시 법무실, 공사 관련 업체와 협의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공개한 감리보고서나 계약·설계 관련 문서에 만일

시공사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으면,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제3자 의견서를 시공사에게 공개해달라고 할 테니 아마 동의를 못 받아 비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낱낱히 어려운 이유를 대기도 했다.

정작 광주대표도서관 감리 측은 “발주처(광주시)가 ‘갑’인 구조다.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돌연 “인력을 차출해 ‘정보 공개팀’을 새로 구성해서 정보 공개 절차를 밟겠

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자체가 갖춘 자료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다루는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실효성 의문만 키우고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망사고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진상 규명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더욱 필요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며, 장례 이후에는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기관이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 앞두고 보도 청탁…출마예정자 집유

### 예비후보 등록 전 불출마 선언

영광군수 재선거 출마를 노리고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며 지역 매체에 우호적 보도를 내 줄 것을 요구한 영광군수 출마예정자가 정역형의 집행유예 혐의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인 B씨와 지역 매체 관계자 C씨에게 각 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79여 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떡 상자에 담긴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

행하라”는 등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에게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B씨를 통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정탁성 혐의를 받고 영광군 선거구민에게 흥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약 흥보성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조합장 재직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출 내용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상당 부분은 실비 보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안 의원 “준법정신으로 선거 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검찰이 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종선 경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사촌동생 A씨와 공모해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

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 의원이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지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정역 2년을,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이후 자료를 내고 “선거과정 철저하게 준법정신으로 임했는데 선거이후 갑자기 쏙워진 범죄혐의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협명한 판단과 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